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단순 엄포용?'

광주 236대 3년간 63건 적발...지자체 매년 추가설치에도 실적 저조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 의문...불법투기 막을 실질적 대책 필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광주지역 지자체가 수 억원을 들여 설치한 이동형 CCTV의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용 CCTV가 설치됐음에도 버젓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지자체는 예방효과를 내세워 매년 CCTV 대수를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6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는 총 236대(동구 85대, 서구 11대, 남구 21대, 북구 106대, 광산구 13대)다.

한 대당 평균 430만원이라는 점에서 산술적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지자체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5개 지자체가 최근 3년(2021년~2023년 10월)간 이동형 CCTV를 통해 불법투기를 적발한 건수는 총 63건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동형 CCTV를 통해 적발한 무단투기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63건 모두 북구에서만 적발했고, 서구와 남구, 광산구의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동구는 이동식과 고정식 카메라 적발 통계를 구분해 놓

지 않아 실적조차 알 수 없었다.

이동형 CCTV는 사실상 단속장비로서 한계가 있다.

이동형 CCTV에 불법투기행위가 찍히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는 추적 조사 없이 무단 투기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투기자의 이후 동선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단속이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쓰레기 투기 단속 기동반이 투입돼 이동형 CCTV 내의 메모리를 확인하며 투기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다.

불법 투기 쓰레기 봉투를 직접 뜯어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발견해야만 적발이 가능하다.

결국 '경고용'으로 이동식 CCTV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설치에 나서고 있다.

5개 지자체는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최소 30대 가량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동형 CCTV 앞에는 불법쓰



5일 밤 11시에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이동식 CCTV 주변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불법투기 쓰레기가 혼재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레기가 버젓이 버려지고 있다. 지난 5일 밤 11시에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골목가에는 밤 사이 쌓인 불법 투기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었다.

광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동형 CCTV는 사실상 무단투기를 단속해 처벌하기 위한 용도라기보

단 예방용에 가깝다"며 "집 앞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 상습 투기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보수단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고발 경찰 "사유 충분치 않다" 불송치

경찰이 한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시민모임 관계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최근 종결처리했다.

보수단체는 지난 5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승소했을 때 배상·위로금의 20%를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단체 대표의 주소지가 광주시 광산구여서 광주광산경찰청이 지난 7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자발적 재능기부로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먼저 위로금 일부 기부를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이 약정은 2012년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손해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근씨와 맺은 것이다.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3개월)이 남아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내 땅 절대 못 지나가!' ... 법원의 판단은?

"내 땅 절대 못 지나간다."

토지 소유주가 주민이 오가는 도로를 사유지라며 통행금지하는 경우가 잇따라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눈길이 쏠린다.

광주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남수진)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도로에 놓인 물건들을 수거해 A씨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남편과 B씨의 형은 여수의 같은 동에서 위아래로 붙은 토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B씨의 형은 지난 2009년 도로로 사용되다 펜션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토지를 매수했다. 이 도로는 지난 1991년 콘크리트로 포장됐고 그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B씨는 2019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부지에 하수관거, 시멘트 벽돌 등 공사용 자재와 소파, 평상,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을 적재해뒀다.

사유지 도로 통행금지 잇단 분쟁 주위토지 통행권 놓고 해석 주목 법원 2개 사안 엇갈린 판결 눈길

이에 A씨는 통행을 방지하는 물건들을 치우고 통행 및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나 과도한 비용이 들 때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체 통행로는 폭이 190cm에 불과해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고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소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C씨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전 소유자로부터 광주시 동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D씨는 지난 2008년 C씨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자로 C씨 토지의 원소유자와 지난 2019년 주위통행권을 두고 조정을 했다. 당시 C씨 토지의 원소유자가 D씨에게 폭 120cm 통행로를 사용하면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였다.

쟁점은 이 조정이 C씨와 D씨의 법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기도당을 운영하는 C씨가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통행 폭을 더 넓히길 요구하고 있어 변경된 청구라는 점을 들어 위 조정은 영향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승계인이라는 점에서 원소유자와 맺은 조정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긴 하나 다른 통행로가 있고, C씨가 곳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물건과 음식을 실어 나를 필요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은행간부 사칭 150억대 펀드사기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추가 범행 정황 포착

검찰이 은행간부를 사칭해 150억원대의 펀드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은행 광

주지역 간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은행의 고위 간부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펀드 투자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피해 더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휠체어 밀다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다른 환자 휠체어와 충돌 사고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명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요양병

원에서 환자의 휠체어를 밀다 하반신 마비 환자인 B씨가 타고 있던 휠체어와 충돌해 B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인 A씨의 사고로 B씨는 머리부터 넘어져 수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원만한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